

『2025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외국의료인 국내 연수·한국의료 편의성 증대 등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료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개인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적격자가 있는 경우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3.

보건복지부장관

I 포상 개요

1. 추진 목적

-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의 공로를 격려함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함

2. 추진 방침

- 글로벌 헬스케어 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후보자를 발굴·포상
 - 관련기관, 복지부 및 상훈 홈페이지에 포상계획을 공개하여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외국의료인 국내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후보자를 적극 발굴
-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및 포상 실시
 - 포상적격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검증 및 심사 등을 거치고, 「정부표창규정」,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

II 포상 계획

1. 포상 일시 및 장소(예정)

- (행사명) 2025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일시·장소) 2025년 3월 중, 서울 코엑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확정시 재공지 예정

2. 포상 규모

(단위: 점)

훈격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규모	1	1	4	17 (일반분야: 15, 한의약분야: 2)

* 정부포상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3. 포상 후보자 자격요건

□ 추천 대상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의료서비스·병원정보시스템·제약·의료기기 등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나눔의료 확산 등의 노력으로 **한국 의료 우수성**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다년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참여 등 **외국인환자 편의 증대**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지역 내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및 의료 해외진출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지자체 및 공무원
- **한의학·한약 분야** 해외 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와 국내 인프라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추천 기준

- 수공 기간(추천일 기준)
 - (훈·포장) 각 15년(훈장) 및 10년(포장)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 (장관 표창)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 실 근무기간만 대상(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 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추천 제한사유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고

< 재포상 금지(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될 수 있음
- (장관표창) 장관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 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상 제한 >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단체)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상기 외의 사항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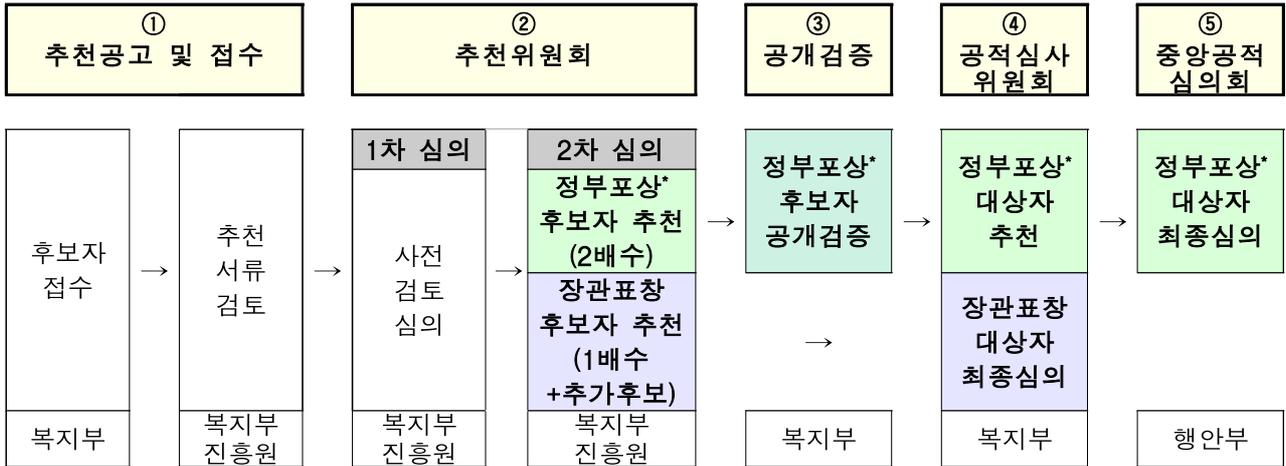
4. 추천 방법

- 기관추천: 추천기관*에서 엄격한 자체 심사를 거쳐 복지부에 추천
 - * 지방자치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의료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 국민추천 (단, 본인(단체) 자체 추천 불가, 공무원 추천대상 제외)

5. 포상 추진 절차

- 서류(요건)심사, 후보추천 및 공적심사 등을 거쳐 포상자 선정 예정

< 후보자 추천·접수 및 심의절차 >



* 포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심사기준은 수공기간, 국민생활 향상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 발전에 대한 업적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포상추천자 공개검증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추천 후보자의 소속, 성명, 주요 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및 상훈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
 - 전자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포상대상자 심사·선정
 - 부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공기간·기여도·관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추천 후보자 심사 및 확정**
 - ※ 일반분야와 한의약 분야 별도 심사
 - 단,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은 부내 공적심사위원회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확정 거쳐 최종 선정

III 추천 관련 사항

□ 추천기한 : 2024. 11. 4.(월) 18:00까지

※ 우편물은 마감일까지 도착 서류만 인정함

□ 추천 방법

- (기관추천) 추천기관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포상후보자를 선발하여 추천서류를 추천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원본서류 우편 송부)
- (국민추천)* 추천서류 일체를 추천기한 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후 수신 여부 확인

* 일반 국민 및 단체 대상 (본인(단체) 자체 추천 불가, 공무원 추천대상 제외)

□ 제출처

추천 분야	일반 분야	한방 분야
공문 수신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이메일	roundabout3@korea.kr	wotjs0321@korea.kr
유선번호	044-202-2994	044-202-2592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상세 내용은 【붙임2】 참고

제출서류명	제출형태	작성 요령									
포상 추천서 <서식1>	한글파일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자현황 <서식2>	한글파일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공적요약서 <서식3>	한글파일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공적조서 <4-1> 개인용 <4-2> 단체용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 또는 직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 (작성방법) 대상자 1명(기관 1개)당 1개 파일로 제출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히 <p style="text-align: center;"><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지자체</th> <th style="width: 50%;">민간 기관(단체)</th> </tr> </thead> <tbody> <tr> <td>조사자</td> <td>소관과장</td> <td>소관부서장</td> </tr> <tr> <td>추천관</td> <td>자치단체장</td> <td>기관장, 단체장</td> </tr> </tbody> </table>	구분	지자체	민간 기관(단체)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부서장	추천관	자치단체장	기관장, 단체장
구분	지자체	민간 기관(단체)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부서장									
추천관	자치단체장	기관장, 단체장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서식5>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 또는 직인 포함)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현지확인서 <서식6>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 또는 직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대상)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사회적 물의여부 등 									

제출서류명	제출형태	작성 요령
정부포상동의서 <서식7>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 또는 직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 양식 <서식8>	한글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대상)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서식9>	한글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사업장 등 조회 양식 <서식10>	한글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대상)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인 경우
포상후보자 추천자 명부 <별첨>	엑셀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작성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변경 금지 ○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2024.11.6.) 기준으로 하여 작성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관은 공문으로 제출서류 파일을 모두 첨부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첨부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며, 날인 또는 직인이 들어가는 서류는 스캔파일(.pdf)도 추가 첨부하여 제출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시 5매 이내로 별도 제출(공적조서 내 첨부금지) 	

□ 추천 시 유의 사항

○ 포상 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 공적 분야 해당 업무의 책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천기관에서는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 내용과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구체적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포상 대상, 기준 및 추천 제한 해당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시 접수처에 해당 내용 고지 필수

○ 표창 대상자 인적 사항 확인 철저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 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을 구분하여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할 것
-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 시 상벌관계 및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서식7> 제출)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 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에 책임이 있음

○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 시 **예상 훈격 및 내부순위를 정하여** 추천하되, 실제 포상대상자 및 훈격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포상후보자에게 포상 훈격이 달라질 수 있음과 추천 대상 모두 최종 포상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사전 통지**

-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 기간 포상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과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천

○ 일반국민 포상(정부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일반국민 포상(장관표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범위 내에서 감점함
- 다)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공무원 포상(정부포상)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재(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 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형사처분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포상(장관표창)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이외, 상세내용은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 참조

붙임 2

포상추천 관련 제출서류

<서식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천인	성명* (단체명)		관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직업)	
	전화*	(주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현		(~)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주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천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작성 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수공기간 기재는 년도-개월-일자 예) 30-02-19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접수 마감일('24.11.4.) 기준

※ ③~⑦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일괄 조회 예정

☞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 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 검·경 등 조사 및 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⑧ ~ 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기

※ 추천 훈격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택 1

<서식 3> 공적 요약서(추천기관별 1부 작성)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70자 이내)
1	OO대학	교수	홍길동 (洪吉同) 551203-1000000	10년3개월17일 (장관표창) ※ 실근무기간만 기입 (군복무/휴직기간 등 제외)	[작성방법] ① 70자 이내 ②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 휴면명조, 글자크기 12p, 줄간격 160% ③ 공적이 잘 나타나도록 공적조서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하여 작성하되, 육하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2					

[작성 시 유의사항]

- ※ 민간인, 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단체, 단체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반드시 기재
- ※ 수공기간은 2024. 10. 31. 기준으로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서식 4-1> 공적조서(개인용)

공적조서(개인용)

(앞쪽)

성 명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직 업		소 속	(법정 명칭)
직 위	(공식 명칭)	직 급 · 계 급	(공식 명칭)
추천 훈격(勳格)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00년 00월 00일 (★ 2024.11.4. 기준)
공적 요지(70자 이내) <b style="color: red;">[작성 시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따라 공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에 기여함' 등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추천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 ※ 추천관 : 추천기관의 기관장			
조사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종류
. . .	장관 및 시도지사 표창 이상 기재(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공적 내용	
<p>[작성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실적은 계량화하여 표시) ※ 표, 사진, 그림 절대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 자유) ※ 2,000자 이상(A4 3매 이상), 2,000자 미만 시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확인: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 ※ 용지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먼명조, 12p, 줄간격 160% 	

<서식 4 - 2> 공적조서(추천대상자가 기관·단체인 경우 작성)

공적조서(단체용)

(앞쪽)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 번호)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대 표 자 성 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e-mail)	(직장)	
추천 훈격(勳格)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00년 00월 00일 (★ 2024.11.4. 기준)
공적 요지(70자 이내)			
<p>[작성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에 기여함' 등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추천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 ※ 추천관 : 추천기관의 기관장 			
조사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관인 </div>

210mm×297mm[백상지 80g/㎡]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종류
. . .	장관 및 시도지사 표창 이상 기재(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공적 내용	
<p>[작성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실적은 계량화하여 표시) ※ 표, 사진, 그림 절대 사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형식 자유) ※ 2,000자 이상(A4 3매 이상), 2,000자 미만 시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확인: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 ※ 용지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먼명조, 12p, 줄간격 160% 	

<서식 6> 현지확인서(포상후보자가 민간인인 경우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급) :

2. 주요공적내용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 과거 포상경력 반드시 포함(장관표창 이상 기록)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 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없음
--- 행정처분 없음
--- 도덕성 등 품성, 지역 여론이 ~하며,
--- 하기에 포상대상자로 적합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용)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보건복지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1	홍길동	과장	○○○병원	남○○	123456-1234567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서식 9> 추천대상자가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작성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1	홍길동	123456-1234567	의사면허 12345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종류

<서식 10> 추천대상자가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사업장 등 조회 양식

※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불량사업장 조회가 불가할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책임지지 않음
(번호 입력 오류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 입력 요망!)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확인 기재

※ "사업장명,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훈격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00시00구 00동 XX번지	홍길동	111111111 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 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OO주식회사	000시 000구 000동 ***번지	임꺽정	222222222 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 총리 표창	OO 주식회사	기업체	
03	** 연구원	00도00군 00동 XX번지	이세종	333333333 3333	3333333333	33333333333		포장	장영실	공무원	
04											
05											
06											
07											
08											
09											
10											

<별첨> 포상 추천후보자 명단(엑셀 파일)